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5. 13.

운영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: 2020년 4월 22일
- 나. 발 의 자: 장순원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5월 7일
- 라. 상정일자: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5. 1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장순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(대통령령)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신고대상 외부강의 규정 완화 및 신고기간 변경(안 제20조제2항)

- 신고대상: 외부강의 등 →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
- 신고기간: 사전 → 사후 10일 이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- 본 조례안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(2020. 5.27. 시행)에 따라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신고기간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으로는, 안 제20조에서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하고, 신고기간을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4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4월 일
발 의 자 : 장순원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-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(대통령령)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외부 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고대상 외부강의 규정 완화 및 신고기간 변경(안 제20조제2항)
 - 외부강의 등 →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
 - 사전 → 사후 10일 이내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0. 4. 22. ~ 4. 27./ 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**등을**”을 “**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**”로, “**미리**”를 “**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**”로 하고, 같은조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조제5항 중 “**그**”를 “**그 의원의**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은 <u>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<u>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<u>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	<p>제20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</u> ----- -----<u>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의원의</u>----- 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